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9. 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4. 9. 1.(일) ~ 9. 27.(금)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지원규모 : 약 1,250가구 / 年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최대 연 3.0%)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 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24. 9. 1.기준)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 시에만 지원 가능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7. 6. 1. ~ '24. 9. 1.)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구 분	소득금액 확인 내역	비 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근로) +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연말정산	지급받은 총액(근로소득) + 소득금액(사업, 연금, 종교인)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 (년 귀속)							처리기간 즉 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 과세	총 결정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수입금액									
소득금액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 총 결정세액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 원)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									
구 분	소득 발생 처		지급받은 총 액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용근로)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 제외)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4. 9. 1.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내 소재 대상주택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온라인 신청방법[‘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설치

- 스마트폰 앱 스토어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검색 후, 앱(APP) 설치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가입 후, 사업 신청

※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 대상 제외)



□ 온라인 신청 주요 정보 입력 방법

① 가구 정보

- (혼인 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기재
 - 2017. 6. 1. ~ 2024. 9. 1. 기간 내 혼인한 가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녀 수)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 수 기재
 - 2005. 6. 1. ~ 2024. 9. 1. 기간 내 출생한 자녀의 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2024. 9. 1.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② 연소득 정보

- 부부 각각 '22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등’ 의 합계를 입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 입력은 원 단위까지 하며, 오류 발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발급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제출 필요

3 대출 정보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세부 정보 입력
 - (대출금 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등)
- 대출이자 상환액 및 예정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확인
 - (이자상환액 산출기간) '23. 6. 1. ~ '24. 5. 31.

5.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 최초(1년차) 지급방안

- (지급시기) '24년 12월 한 * 별도 통지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
- (지급범위) 상환이자 납부액 범위 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정산 지원
- (증빙자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지원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자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항 별도 통지
- (증빙자료 검수) 온라인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 ⇒ 신청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 실제 납부한 상환이자 납부액 범위 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 1억 원 한도 내 지원
- (이자 지원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연 2.5% ~ 연 3.0%)

소득구간	1구간(5천만 원 이하)	2구간(5~8천만 원 이하)
지원율	최대 연 3.0%	최대 연 2.5%

□ 2년차 지급방안

- (증빙자료) 거주지, 혼인관계, 무주택 등 지원 요건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 (제출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증빙자료 제출시기) '25. 6. 2. ~ 6. 13.(기간 중)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시기) 증빙자료 검토 후, '25. 12월 한 지급

□ 지원금 산출기준

- 지원대상자 대출 상환이자 납부액 범위 내 지원금 지급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억 원 한도 내 지원

소득구간	이자 지원율	신청자 대출 현황		상환이자 지원금 계산 방법(예시)
		보증금 대출잔액	대출금리	
1구간 (5천만 원 이하)	최대 연 3.0%	1억 원 이하	연 3.0% 이하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연 3.0% 초과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1억 원 초과	연 3.0% 이하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연 3.0% 초과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2구간 (5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최대 연 2.5%	1억 원 이하	연 2.5% 이하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연 2.5% 초과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1억 원 초과	연 2.5% 이하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연 2.5% 초과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6.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기준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 정산 지급 또는 미지급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 환수 조치(향후 지원 불가)

구분	세부내용	처리방법
지원 중단	2년차 제출서류 미제출	2년차 지원금 미지급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시)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정산 지급
	주택 소유(분양권 포함)	
	기타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이혼/사망 등)	
지원금 환수	신청 서류에 허위/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 월까지 금액 환수

7.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구원 중복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자에 한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차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사항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원예정자 읍면동 제출 증빙자료 및 유의사항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붙임1**지원예정자 읍면동 제출 증빙자료 및 유의사항**

※ 최초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사업 신청 시에는 별도 증빙자료 미첨부

⇒ 지원예정자로 선정 통지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발급처
1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제출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
4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자
5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홈택스, 정부24
6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금융기관
7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23. 6. 1. ~ '24. 5. 31.)	"	
8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 전국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9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0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및 신분증 사본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	신청자
11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해당자 제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제출 시 유의사항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자 신분증(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신청자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만 14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 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
만 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제출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용도, 대출잔액 등 확인용
(주택 전·월세 등으로 명기, 주택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제외)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1부**
 - 기간('23. 6. 1. ~ '24. 5. 31.), 월별 상환 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 2024년 전국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확인용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확인서 인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와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 동일 여부 확인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통장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필요시) 1부**
-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요건**

문의사항	답변내용
1. 신혼부부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신혼부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2.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가구원은 부부(신청자, 배우자)와 자녀 입니다.
4. 가구원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부부 및 자녀의 주소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도내 시군 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기간 중에 가구원 1명 이상 타 시도 로 전출갈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는 '24년에는 사업신청이 불가 하지만 내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7.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 되며, 태아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예정자로 선정되실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9.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및 배우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0. 분양권 소유 시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일 기준, 분양권 소지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공고일 이후 매도 시, 내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답변 내용
11.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입 신고가 가능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12. 대출상품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본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에 한하여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기타 대출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대출목적이 전·월세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문의 사항	답변 내용
1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예정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자녀 수 배점의 합계로 결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연소득 배점은 3천만 원 미만 ~ 8천만 원 이하까지 1점 ~ 5점이며, 자녀 수 배점은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으로 나누어 0점 ~ 5점입니다. ※ 자녀 수 배점을 받는 대상은 미성년 자녀에 한하며, 2005. 6. 1. ~ 2024. 9. 1. 기간 내 출생자여야 합니다.

□ 변동사항

문의 사항	답변 내용
14.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를 이동해도 되나요?	지원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최종 지급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도내 시군 간 전·출입은 지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로 전출 갈 경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15. 대출 상환, 주택 구입,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상환하신 이자를 정산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갈 경우 2년차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문의사항	답변내용
16. 2024. 9. 1. 기준,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로부터 2024. 5. 31.까지의 상환이자에 대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17. 대상자 확정 이후, 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내 전체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이후(11월) 지원대상자 규모에 맞는 시군별 예산편성 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원금 지급시기는 금년 12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자 확정 시, 시군별 지급시기 별도 통보
18. 소득기준에 따라 이자지원율이 다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연 3.0%, 5천만 원 초과 가구는 최대 연 2.5% 지원됩니다.

□ 기타사항

문의사항	답변내용
19.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나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으로 최초 신청 시에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빙자료를 참고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며 추후 온라인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 변동금리의 경우 사업 신청 시 이율을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변동금리일 경우 이자율은 공고일 기준 월의 최종 이자율을 기입 하시면 됩니다.
21.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로 거주 하며,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2. 대환 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출이자 정산기간('23. 6. 1. ~ '24. 5. 31.) 중 전·월세 보증금 목적으로 대출상품을 대환할 경우 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